

Deloitte.

Tax & Legal Alert

2025년 기업법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제76/2025/QH15호 법률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2025년 7월



2025년 기업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제76/2025/QH15호 법률의 주요 내용

2025년 6월 17일, 국회는 2025년 기업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률 제76/2025/QH15호(이하 "2025년 개정 기업법")를 통과시켰으며, 본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는 2025년 6월 30일자 제168/2025/ND-CP호 시행령(이하 "제168호 시행령")을 공표하여 기업 등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재정부는 2025년 7월 1일자 제68/2025/TT-BTC호 시행규칙(이하 "제68호 시행규칙")을 발표하여 기업 및 가업 등록에 대한 양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침 문서들은 2025년 개정 기업법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는 새로운 규정들이 기업 운영에 미치는 주요 변경 사항과 그 영향입니다.



기업에 '실질적 소유자(BO)' 개념 도입

2025년 개정 기업법은 기업에 대한 "법인의 실질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이하 'BO')"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가 소유한 기업을 제외하고, 회사의 자본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BO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은 제168호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을 BO로 간주합니다:

- ✓ 회사의 자본금 또는 전체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개인;
- ✓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개인: 이사회의 과반수 또는 전원, 이사회 의장, 구성원총회 의장, 법적 대표자, 이사 또는 총괄이사의 임명, 해임 또는 면직; 회사 정관의 수정 또는 보완, 회사의 지배구조 변경, 회사의 구조조정 또는 해산;

기업은 실질적 소유자(BO)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갱신 및 보관하며, 요청 시 관할 국가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2025년 개정 기업법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은 최신 기업등록 사항 변경 또는 기업등록 정보 변경을 신고할 때 BO 정보를 등록하고 보완한다.

또한, 재정부는 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제68호 시행규칙 를 통해 실질적 소유자 정보의 신고 및 통지에 관한 표준 양식을 제정하였다.



2020년 기업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제76/2025/QH15호 법률의 주요 내용(계속.)



자본금 출자지분 또는 주식의 시장가치에 대한 정의 개정

2025년 개정 기업법은 자본금 출자지분 또는 주식의 **시장가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상장주식 또는 증권거래시스템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 평가 기준일 직전 연속 **30일간의 평균** 거래가격,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합의 가격, 또는 평가기관이 산정한 가격 중 하나를 적용한다;
- ✓ **상기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출자지분 또는 주식의 경우, **가장 최근 시점의** 시장 거래가격,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합의 가격, 또는 평가기관이 산정한 가격 중 하나를 적용한다.

2025년 개정된 기업법은 상장기업이나 증권거래 시스템에 등록된 기업의 주식 시장가치를 산정할 때, 그 외 기업들과 **구별되는 기준**을 제시한다. 기존의 시장가치 산정 방식은 지분이나 자본 재매입, 주식 발행 시 당사자 간 유연하게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으나, 최근 거래가격만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상장기업의 실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비공개 회사채 발행 규정 개정

2025년 개정된 기업법은 비상장 주식회사의 사모 회사채 발행에 대해 더욱 엄격한 조건을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발행 기업은 최근의 감사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발행 예정인 회사채를 포함한 총부채가 자기자본의 5배(0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부채비율 요건은 발행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채권 만기 시 투자자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2020년 기업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제76/2025/QH15호 법률의 주요 내용(계속.)



시행령 및 개정된 사업자등록 양식 공포

제168호 시행령 및 제68호 시행규칙은 행정 절차 개혁 및 베트남의 기업 등록 제도 현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전자 신원확인(e-ID)**을 완료한 경우, 다수의 절차에서 **개인 신분증명 서류** 제출이 면제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개정은 서류 작업을 간소화하고 디지털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아울러 본사 주소 변경, 개인기업의 투자자본 조정, 업종 변경 신고 등 다양한 일반 절차의 처리 기간이 단 **1영업일**로 대폭 단축되었다.

딜로이트 베트남의 인사이트



딜로이트 베트남의 인사이트

전반적으로 볼 때, 2025년 개정 기업법과 함께 제168호 시행령 및 제68호 시행규칙의 공포는 디지털화 및 투명성 강화를 지향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을 위한 법적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 전환을 반영한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절차 간소화를 넘어, 법제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규제를 마련함으로써, 베트남이 경쟁력 있는 투자 환경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제168호 시행령 제18.1조 및 제18.2조에 따라 정의된 개인인 실질적 소유자 (BOs)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기업등록사항 변경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수행할 때 기업등록기관에 이를 적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은 기업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갱신할 때, 제168호 시행령 및 제68호 시행규칙에서 새롭게 도입된 양식 및 행정절차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이는 잘못된 서식 사용이나 기업등록기관의 지침 미준수로 인해 보완 요청 또는 서류 재제출이 발생하여,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Vietnam Tax Firm
of the Year
(2021 - 2024)**



Contact us

Vietnam Korean Service Group

Deloitte Global Korean Services Group(KSG)의 일원으로서, 베트남 KSG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확장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및 언어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회계, 세무, 재무 자문 및 컨설팅을 포함한 폭넓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한국 기업들의 요구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시에 상주하는 한국어 구사 전문가를 포함한 전담 팀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한국 기업의 고유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 회계사
KSG Leader – HCMC office
+84 901 197 014
keunslee@deloitte.com



류경석 회계사
Tax Director – Hanoi office
+ 84 96 227 8254
kyungryu@deloitte.com



To stay informed with our previous newsletters – visit:
[Deloitte's website](https://www.deloitte.com)

Deloitte's Tax & Legal Newsletter is intended for reference purposes only and is not for distribution or resale.



**Vietnam Tax Firm
of the Year
(2021 - 2024)**



Contact us



Bui Tuan Minh

Country Tax & Legal Lead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Thomas McClelland

Tax Partn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



Vu Thu Ha

Tax Partner
+84 24 710 50024
hatvu@deloitte.com



Dang Mai Kim Ngan

Tax Partner
+84 28 710 14351
ngandang@deloitte.com



Pham Quynh Ngoc

Legal Partner
+84 24 710 50070
ngocpham@deloitte.com



Tran Quoc Thang

Tax Partner
+84 28 710 14323
qthang@deloitte.com



Vu Minh Ngoc

Tax Partner
+84 28 7101 4645
ngocmvu@deloitte.com



To stay informed with our previous newsletters – visit:
[Deloitte's website](#)

Deloitte's Tax & Legal Newsletter is intended for reference purposes only and is not for distribution or resale.

Office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Lang Ward,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Sai Gon Ward,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